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5226

제출년월일 : 2018. 10. 2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민선6기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,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직 기능 조정·보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 5,861명을 5,930명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 3,262명을 3,330명으로 하며, 의회사무기 구의 정원 86명을 87명으로 함(안 제2조)
- 나.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이상 비율 42%를 35%로 하고, 5급상당 비율 36%를 35%로 하며, 6급상당 비율 12%를 25%하고, 7급상당 비율 10%를 5%로 함(안 별표 2 제4호)
- 다. 정원표 총계 5,861명을 5,930명으로 하고, 일반직 계 3,160명을3,220명으로 하며, 연구직 계 145명을 150명으로 하고, 별정직 계 16명을 20명으로 함(안 별표 3)

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나, 관계법령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8. 8. 30. ~ 9. 10.(11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5,861명"을 "5,930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3,262명"을 "3,330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86명"을 "87명"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제4호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 · 9급상당
비 율	35% 이내	35% 이내	25% 이내	5% 이상	_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	066-1	166 14	<u>킬 경전표</u> (세4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	경제자유구 역청
총 계	5,930					
정무직 계	1					
시장	1	1				
일반직 계	3,220					1
1급						
2-3급	2	1	1			
3급	15	12			3	
3-4급	3	3				
4급	106	72	3	2	28	1
4-5급						
5급 이하	3,088					
전문경력관	6					
연구직 계	150					
연구관	20			17	3	
연구사	130					
지도직 계	26			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23					
별정직 계	20					
1급상당	1	1				
4급상당	6	1	5			
5급상당 이하	13					
소방직 계	2,513					
소방정	14	6		8		
소방령 이하	2,499			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2조(정원의 총수) 대구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,861명으로 하며 다음

현

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3,262명
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86명</u>

3. (생략)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 ┃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~3. (생략)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·9급 상당
비 율	<u>42%</u> 이내	<u>36%</u> 이내	<u>12%</u> 이내	<u>10%</u> 이상	-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

개

정

안

---- <u>5,930명</u>----

-----.

1. ----- : 3,330명 2. ----- : <u>87명</u>

3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2]

1.~3. (현행과 같음)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·9급 상당
비 율	<u>35%</u> <u>이내</u>	<u>35%</u> 이내	<u>25%</u> 이내	<u>5%</u> 이상	-

개 정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회 사무 처	직속 기관	사업 소	경제 자유 구역 청
총 계	5,861					
총 계 정무직 계	1					
Ⅰ 시자 Ⅰ	1	1				
시장 일반직 계	3,160					
<u>1급</u>	,					
2-3급	3	2	1			
3급	13 3 102	10			3	
3-4급	3	3				
4급	102	70	3	2	26	1
4-5급	1	1				
5급 이하 전문경력	3,032					
전문경력	6					
관	0					
연구직 계	145					
연구관	20 125 26 3 23			17	3	
연구사	125					
지도직 계	26			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<u>23</u>					
별정직 계	16	-				
1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이	1	1				
<u>4급상당</u>	6	1	5			
	9					
하						
소방직 계 소방정 소방령이	2,513					
소방정	14	6		8		
소방령이 하	2,499					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관련)

기관별			의회	직속		경제
1 112	총 계	본청			시업소	자유
직급별			시무처	기관	1 1 1	구역청
총계	5,930				1	1 10
총 계 정무직 계	1					
시작	1	1				
일반직 계	3,220					
1급						
2-3급	2	1	1			
3급	15	12 3 72			3	
3급 3-4급 4급 4-5급	3	3	_			
4급	106	72	3	2	28	1
	-	_				
5급 이하 전문경력관	3,088					
전문경력관 연구직 계	6					
	150		1	17	1 2	
연구관	20			17	3	
연구사 지도직 계	130					
<u> 기도색 세</u> 지도관	26		1	3	I	
지도선 지도사	3 23			<u> </u>		
별정직 계	20					
1 7 3 1 1 1	1	1				
1급성당 4급상당	6	1	5			
5급상당이하	13			I.	I	
소방직 계	2,513					
소방정	14	6		8		
소방령이하	2,499					
,						

관계 법 령

[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]

제22조(정원책정의 일반기준) ① (생략)

-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시·도의 경우 : 본청, 의회사무처, 합의제행정기관, 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, 경제자유구역청 2. (생략)
- 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 - 2. 본청 ·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 -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-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- 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 -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④~⑤ (생략)

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워 정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개 요

-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: 5,861명 → 5,930명(증 69명)
- 집행기관의 정원: 3,262명 → 3,330명(증 68명)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86명 → 87명(증 1명)
- 일반직 정원 조정(증 60명)
- 2·3급 △1명, 3급 2명, 4급 4명, 4·5급 △1명, 5급 △4명, 6급 27명, 7급 25명, 8급 8명
- 별정직 정원 조정(증 4명)
- 5급상당 1명, 6급상당 3명
- 연구직 정원 조정(증 5명)
- 연구사 5명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 현안사업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력을 증원함

3. 관련조문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(정원책정의 일반기준) 및 제30조(정원의 규정)

4. 비용 추계결과

구 분	인 원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금액(원)	69명	2,507,641,281	2,577,855,236	2,650,035,183	2,724,236,169	2,800,514,781

- 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- 6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익

연도별 비용 추계표(세출)

(단위 : 원, 명)

2	김 급	기준금액 (차액)	인원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	계			2,507,641,281	2,577,855,236	2,650,035,183	2,724,236,169	2,800,514,781
3	: 계			2,045,257,640	2,102,524,853	2,161,395,549	2,221,914,625	2,284,128,234
	4급 → 3급	12,462,901	1	12,462,901	12,811,862	13,170,594	13,539,371	13,918,473
	5급 → 4급	12,545,864	4	50,183,456	51,588,593	53,033,074	54,518,000	56,044,504
일	6급 → 5급	8,449,010	-					
반	7급 → 6급	2,947,781	27	79,590,087	81,818,609	84,109,530	86,464,597	88,885,606
직	8급 → 7급	2,966,303	52	154,247,756	158,566,693	163,006,560	167,570,744	172,262,725
'	9급 → 8급	1,607,158	60	96,429,480	99,129,505	101,905,131	104,758,475	107,691,712
	9급	27,539,066	60	1,652,343,960	1,698,609,591	1,746,170,660	1,795,063,438	1,845,325,214
3	그 계			289,501,311	297,607,348	305,940,354	314,506,684	323,312,871
増ね	5급	85,710,600	1	85,710,600	88,110,497	90,577,591	93,113,764	95,720,949
정 직	6급	67,930,237	3	203,790,711	209,496,851	215,362,763	221,392,920	227,591,922
3	_ 계			172,882,330	177,723,035	182,699,280	187,814,860	193,073,676
연 구 직	연구 사	34,576,466	5	172,882,330	177,723,035	182,699,280	187,814,860	193,073,676